

#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의 주거생활사: 안산시 고향마을 거주 강제이주 동포를 중심으로

## Housing History of Sakhalin Returnees in Ansan Gohyangmaeul

조재순\*  
Cho, Jaesoo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find out the housing history of Sakhalin returnees since leaving hometown under the Japanese ruling period. Face to face interview had been done with 20 returnees in the community center during October to December, 2008. Personal life as well as housing histories were differed by the reason to move into Sakhalin, which still influenced the returnee's life in Ansan. The housing they had lived changed from barracks like a training camp, to Japanese small wooden cottage/row house, and then Russian brick house/apartment. Housing alteration and addition were common to renew the old house. The boundary of residing area was mostly limited to the first residing location throughout one's life without a long distance move. Housing satisfaction was very high in Gohyangmaeul because of the improvement of housing facilities and residence itself as well as convenience of housing management compared to the residence in Sakhalin. Economic and emotional aspect of life satisfaction were also high through about 8 years of living in. Forced movers still require the compensation on hand no matter the amount.

주요어: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주거생활사; 강제이주; 안산 고향마을; 사할린 잔류한인

Keywords: Sakhalin returnee; Housing history; Forced move; Ansan Gohyangmaeul; Russian Korean in Sakhalin

### I. 서론

사할린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는 러시아 국적을 갖고 러시아 영토에 살고 있는 재러한인 임에도 불구하고 연해주를 포함한 옛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과 한반도에서 이주해 간 배경이 크게 다르다. 사할린 한인동포의 이주는 대부분 일제강점기 후반인 1939~1945년에 일본 영토였던 남사할린으로 강제징용에 의해 이루어졌다. 계약기간 동안 일시적 체류 후 당연히 귀향할 것으로 믿었던 이들은 계약이 강제로 연장되고 마침내 2차 대전이 끝나 이 지역을 일본이 러시아에게 넘겨준 후에도 귀향하지 못하고 억지로 잔류하게 되었다. 이들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귀국을 위해 무국적자로 지내다가, 후에 국적을 받아 러시아 공민으로 살게 되었다.

사할린 한인동포의 공식모국방문은 1988년 소련정부가 사할린 한인의 모국방문과 영주귀국을 허용함으로써 다음 해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1989년 한·일 적십자사간에 '사할린 거주 한국인 재회지원 공동사업체'가 결성된 이래 일시방문 및 영주귀국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영주귀국은 1990년 이후 친척이나 민간단체 수용에

의해 고령단신자에게 제한하여 소수 이루어지다가 1994년 한·일정부가 합의한 영주귀국 시범사업인 2000년 고향마을 입주를 앞두고 임대아파트 활용정책에 따라 공식적으로 수십명씩 대규모로 시작되었다.

영주귀국할 수 있는 대상자는 강제징용된 본인을 포함하여 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자이다. 2008년에 500명이 영주귀국하여 2009년 3월 현재 약 2,500명이 강원, 경북, 인천, 서울, 경기, 충북, 충남 등에 있는 양로원, 요양원, 임대아파트 등에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안산고향마을에는 2000년에 입주한 주공1단지 주민 489세대 모두가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동포이다. 이 단지는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가 9백명 가까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가장 큰 단지일 뿐 아니라 첫 사업지역으로 대규모 집단거주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고 있다.

사할린 귀국동포에 대한 연구는 대규모 영주귀국이 이루어진 고향마을 주민의 생활적응 과정에 대한 것(호경임, 2002; 황정태, 2002; 최종혁, 2003; 정천수, 2007)과 노인시설에 거주하는 영주귀국동포에 대한 것(황현옥, 2005; 배상우, 2006; 김주자, 2006)이 있다. 이 가운데 황현옥(2005)의 집단미술치료효과를 알아본 의학대학원 연구를 제외하면 모두 사회복지서비스 측면에서 현 거주지에서의 생활실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1세대가 겪은 독특한 국제간 이주에 따른 주생활 경험에 중점을 두고 생애사적으로 알아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 논문은 200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여성과학자지원사업(우수여성 과학자)에 의하여 연구됨 (KRF-2008-531-C00097).

\* 정회원(주저자, 교신저자),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Ph.D.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할린 영주귀국동포가 사할린으로 떠나면서부터 귀국해서까지 경험한 주거생활사를 구술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주거생활사 연구내용은 주요한 주생활변화가 발생한 강제이주 상황과, 강제노동현장에서의 주거생활, 결혼시 주거생활, 영주귀국하기 직전에 살았던 주거상황, 귀국 후 주거생활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이 연구결과는 사할린 영주귀국동포와 더불어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동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계속 입국하는 영주귀국동포의 국내생활정착을 지원하는 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II. 문헌고찰

### 1. 2차 세계대전 종전 사할린 한인이주

1905년 남사할린을 차지한 일본은 사할린의 석탄과 목재자원의 가치를 인식하고, 개척사업을 시작하였다. 1910년대 초부터 일반 일본인을 대상으로 이주비와 개발비를 지원하던 자유이민방식으로 이주를 권장하다가, 1920년대 중반부터 본토인 중심으로 집단이주를 실시하였으나 1930년대 말 태평양 전쟁준비로 노동력과 자원이 부족해지자 조선인으로 대체하였다. 1939년부터 본격화된 조선인 강제연행은 모집령(1939.9~1942.2), 강제동원령(1942.2~1944.9), 징용령(1944.9~1945.8)을 이용한 것으로 무수한 조선청년을 일본본토와 사할린 등지의 탄광, 산관, 목재 펄프장, 비행장과 도로 건설현장 등으로 끌고 가서 가혹하게 중노동을 시켰다. 사할린으로 강제 징집된 조선인 수는 약 6만~1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많을 뿐 정확한 숫자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인 강제노동자들은 일본인의 엄한 감시 아래 굶주리고 험벗은 채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추위를 견디며 주로 탄광 갱내에서 가혹한 노동을 하였다. 이들은 2년 계약기간이 끝나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렸으나 일본 내무부 경무국장이 통첩한(1942년 12월) '본토이입조선노동자의 기간 만료자에 대한 계속 취로의 건'에 의해 계약이 만기된 경우에도 귀향하지 못하고 재징용되어 기약 없이 강제노동을 계속 해야만 했다.

태평양 전쟁 악화로 석탄 적재선이 사할린으로 제대로 오지 못하자 노동력과 자재 및 선박 부족으로 1944년 우글레고르스크(에스토르) 이북 주로 서해안 북부에 있던 탄광을 폐쇄하고 여기서 일하던 탄부(조선인 3,200명과 일본인 6,000명)와 생산시설과 자재를 일본탄광으로 내보내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 강제로 가족을 사할린에 남겨둔 채 일본본토 탄광으로 배치된 이들을 '사할린 전환배치광부'라 한다. 이로 인해 이 탄광지대에는 이중징용에 의한 모자가정만 남게 되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초 소련이 사할린에서 군사행동을 개시하자 일·소 상호불가침조약을 기대했던 남사할린 일본사회가 극도로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 틈에 일본인

들은 조선인을 러시아의 스파이로 간주하고, 여기다가 가혹행위를 당한 조선인의 보복이 두려워 종전 전후에 조선인을 개인이나 집단으로 무차별 살해, 학살, 총살, 수장하고 주택과 마을을 방화하는 사건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이에 대한 진상조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광복60돌 사할린 피징용한인들 위령제'(한겨레, 2005.8.2)나 '사할린 위령제'(한겨레, 2006.9.8)에 관한 기사를 통해 국내에 알려지고 있다.

### 2.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사할린 한인

전쟁 중에 10여만 명이 피난하거나 섬을 탈출한 후, 종전 당시 사할린에는 출국 금지된 일본인 39만여 명이 억류되어 있었으며 그 가운데 한인이 약 43,000여명 있었다고 추정하나 정확한 조선인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들 조선인의 국적은 모두 일본인이었다. 종전 후 1946년에 조약한 미소잠정협정에 따라 국제결혼한 일본인 부인을 제외하고 사할린에 있던 일본인 전원을 1949년 7월까지 일본영토로 인양하였다. 이때 조선인은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할린에 남겨지게 된다. 조선인은 1956년 일소협약으로 다음 해 국제결혼한 일본인 부인이 인양될 때 일본인 부인을 둔 700여명이 부인을 따라 공식적으로 사할린을 떠났을 뿐이다. 고향으로 송환되기만을 간절히 바랐던 한인은 귀국 희망을 이루지 못한 채 잔류 또는 억류되어 사할린 거주 한인동포가 되었다. 일본인 부인과 함께 일본으로 돌아간 한인들은 '화태귀환제일한국인회'를 조직하고 사할린 잔류한인의 귀환운동을 주도해 왔다.

종전 직후 사할린에 설립한 민정국은 1947년 1월 사할린 소비에트정부로 바뀌었다. 소련정부는 일본어와 한국어 사용과 러시아어를 모르는 사할린 한인에게 사회주의 교육과 조직을 교육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고려인 교육자를 사할린으로 배치 근무시켰다. 이들은 전쟁 중에 소련인 통역자로 온 고려인과 함께 사할린 거주 한인의 인구구성을 다양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전후 사할린의 노동력 부족으로 1946~1949년에 북한에서 1~3년 계약으로 북한노동자 26,000여명이 사할린에 들어와 주로 어업노동자로 일하기도 했는데 이들 중 일부가 귀국하지 않고 남았다. 이 북한 노동자의 통역을 위해 중앙아시아 고려인 300여명이 파견되어와, 전후 7년간 중앙아시아에서 사할린으로 파견된 고려인 지식인과 전문인은 약 2,000명에 이른다. 이들은 대부분 1970년대에 돌아갔다. 1951년 현재 사할린 거주 한인수는 42,916명으로 수산업 종사자가 가장 많다.

1952년 일본이 공식적으로 한인의 일본국적 상실을 통고한 이후, 한인의 소련공민증 발급 신청이 조금씩 늘어났다. 이 무렵(1953~1954) 북한 나훤카 영사관에서 나와서 사할린 한인들에게 북조선 공민증을 받도록 권장한 결과, 1960년대 사할린 한인의 국적보유상황은 북한국적 65%, 소련국적 25%, 무국적자 10%였다. 북한의 선전으

로 1960년대 초 사할린 한인 다수가 입북하고, 학생들이 북한 소재 대학으로 유학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1989년 현재 한인 90% 이상이 소련국적을 갖고 있다.

### 3. 한·러 국교수립 후 사할린 한인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1989년 한·러 국교가 수립되고, 사할린 한인의 고국방문이 시작되어, 1992년에는 사할린 한인 동포가 최초로 춘천 소재 양로원으로 단신 영주 귀국하였으며, 2000년에는 경기도 안산에 489세대가 짝을 맞춰 영주 귀국하였다. 이들의 영주귀국신청은 2010년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사할린 한인 1세대는 이와 같이 고국에 영주 귀국하여 살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한국으로 영주귀국하기를 기다리는 경우와, 사할린에 남아 자녀와 함께 살고자 하는 경우로 나뉜다. 고국으로 영주 귀국한 이들은 자녀와 떨어져 새로운 이산의 고통을 안고 있으며 몇몇은 역귀국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할린 한인 2, 3세대는 대부분 1세대와 달리 사할린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부모의 고향인 한국과 상호관계를 맺으며 사할린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

사할린거주 한인의 주거생활에 관해서는 인류학적 측면에서 현지 조사한 연구(국립민속박물관, 2001)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는 사할린 주도인 유즈노사할린스크 지역에서 한인 5가구의 가정생활을 사례 조사한 것으로, 도시지역에서 사할린 한인이 살고 있는 현 주거생활을 대략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옛 중심 구역이었던 도시 교외지역은 목재나 벽돌로 지은 단독주택만 있다. 이 단독주택은 이곳에 있던 일본식 집을 헐어내고 1950년대에 새로 지은 것으로 그 후 살면서 일부 개축했다. 나무판으로 된 담과 철대문을 들어서면 건물 본체, 부속채, 텃밭, 변소 등이 있다. 실내 벽은 회칠이나 종이로 도배하였고 규모는 크지 않다. 주택외부형식이 주변 러시아인주택과 다른 점이 없다. 시내에는 1960년대 이후 건설한 아파트가 많이 있으며 아파트 외부는 노후하나 실내는 양호한 편이다. 이런 설명으로 미루어볼 때 아파트 실내공간구성은 다른 구소련지역의 것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1997)는 유즈노 사할린스크 서남부지역에 한인 마을이 있다고 언급은 하고 있으나 마을이나 한인주거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 III. 연구방법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고향마을에 있는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지원사업소 소장에게 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노인회 회장을 소개받았다. 노인회 회장은 조사연구를 승낙하고 생년월일과 연락처, 사진이 붙은 명단을 보고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된 주민 가운데 건강상태와 언어소통 정도를 감안하여 면담 가능한 대상자를 검토하였다. 면담 직전에 회장이 한 분씩 연락하여 대상자에게 연

구자를 소개하고, 회장과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협조동의를 얻었다.

자료수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일대일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면담내용은 연령과 원가족, 본인가족을 포함한 가족사항, 사할린으로 떠날 때의 상황, 사할린에 도착해서 종전까지의 주거생활, 결혼시 주거 상황, 영주 귀국 직전에 살던 주거상황, 귀국 후 주거생활을 중심으로 묻고 설명을 들으면서 기록하였다. 면담은 2008년 10월 16일~12월 16일까지 일주일에 하루, 하루에 2~3명씩, 일인당 1시간 내외로 9회에 걸쳐 총 20명과 고향마을 복지관 이미용실 휴게공간에서 이루어졌다.

면담 대상자 조건에 강제징용자를 우선하였으나 고령이나 노환, 가족방문 등으로 면담 가능한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서 고향마을 가구주 가운데 2/3 이상이 사할린으로 가족을 따라 이주한 사실(호경임, 2002)을 감안하여 비징용자도 면담에 포함하였다. 면담에 응해준 대상자는 표 1과 같다.

## IV. 연구결과

### 1. 가족특성

면담자 20명 중 1명(R)만 여성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남성이었다. 남성들은 모두 배우자나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여성면담자는 함께 귀국한 남편과 몇 년 전에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다. 고향은 경북(8명)과 경남(6명)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 전북(2명), 충남, 제주, 경기도이다. 한 분(N)은 사할린에서 태어났다. 대부분 사할린에서 고향마을로 2000년에 입주하였는데 그 이전에 귀국해서 4가구(B, K, L, S)는 인천 삼산동에서, 1가구(E)는 서울 둔촌동에서 약 2년간 거주한 적이 있다.

### 2. 사할린으로 떠날 때 상황

면담자 절반 이상(13명: A~M)은 강제 또는 반강제로 가족과 떨어져 연고없이 혼자 사할린으로 간 경우이고, 나머지는 부모나 친척을 따라 간 경우인데 5명(N~R)은 일본에서 살다가, 2명(S, T)은 한국에서 사할린으로 갔다. 단신으로 모집이나 관동원, 강제징용 등으로 연행된 가족과 생이별한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들은 그 당시 16~24세로 4명은 20세 이상이고 9명은 20세 미만이었다. 강제모집된 H와 J씨는 결혼한지 8개월 되던 때였다. 특히 H씨는 첫 아이가 있는 형 대신 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형의 이름과 연령으로 살고 있다. M씨는 전쟁터 근로보급대로 끌려갈 바에는 모집으로 간 친척이 있는 사할린으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면담자 중 가장 어린 나이인 16세에 친구와 둘이서 모집에 응했다.

사할린으로 간 연도는 대부분 강제동원령시기(1942~1944)에 해당하고 소수(B, J, K)는 전쟁 종료 직전에 강제징용되어 불과 몇개월 노역후 길이 막혀 55년간 귀향

표 1. 면담 대상자

이름	출생년도 (본인연령) (배우자연령)	고향	떠난 해 (연령)	일한 지역 (일본지명) / 부모 따라 간 경위(N~T)
A	장SO 1923 (85) (75)	경남 하동	1943 (18)	고르노자보드스크(나이호로)
B	오SS 1927 (81) (75)	경북 김천	1945 (17)	고르노자보드스크(나이호로)
C	이MY 1922 (86) (69)	경북 선산	1944 (21)	돌린스크(나이브찌)
D	박WC 1926 (82) (75)	경북 김천	1942 (17)	시네고르스크(가와가미)
E	최YM 1921 (87) (80)	경북 김천	1943 (22)	돌린스크(나이브찌)
F	임JH 1920 (88) (81)	충남 천안	1943 (23)	유즈노 사할린스크 (오다니 비행장)
G	김IY 1924 (84) (71)	경북 경산	1942 (18)	시네고르스크(가와가미)
H	배YK 1920 (88) (77)	경북 대곡	1944 (24)	돌린스크(나이브찌)
I	이JO 1922 (86) (83)	경남 울산	1941 (19)	마카로브(가시오탄광)
J	김HT 1922 (86) (78)	전북 부안	1945 (23)	돌린스크(나이브찌)
K	최CK 1927 (81) (71)	경남 울산	1945 (18)	일본해양어업통제주식회사 포경부
L	양JH 1926 (82) (71)	경북 경산	1943 (17)	시네고르스크(가와가미)
M	성JH 1925 (83) (75)	전북 군산	1941 (16)	유즈노사할린스크 일본인 개인농장, 화태개발회사(설탕제조)
N	황YM 1930 (78) (75)	크라노고르스크	1927	1927년 부모가 일본에서 사할린으로 가서 3년 후 출생함.
O	김SY 1934 (74) (68)	경북 김천	1941(7)	일본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사할린 가서 한국에 있던 가족4인초청
P	노YH 1933 (75) (74)	경남 의령	1930	일본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사할린 가서 한국에 있던 어머니 초청.
Q	채JK 1920 (88) (67)	제주 상산	1942 (22)	일본에서 같이 살다가 부모가 사할린 간 수년 후 아버지 찾아 감.
R	문DS 1924 (84) (사망)	경남 삼천포	1941 (17)	7살 때 이모가족 따라 일본으로 가서 살다가 사할린으로 따라 감.
S	천DH 1926 (82) (81)	경남 삼천포	1928 (2)	고향에서 살기 어려워서 가족 모두 감.
T	박DK 1928 (80) (72)	경기 수원	1943 (15)	모집으로 간 아버지에게 모친 사망 후 고아가 되어 연락하여 초청

하지 못했다. 이들 중 계약기간 2년이 지난 경우(A, D, G, I, L)는 모두 강제로 재계약이 되었다. 계약이 연장된 I씨는 첫 계약기간 2년 만료 후 잠시 귀국해서 결혼하고 돌아오다가 몇 개월 후에 다시 귀국하여 부인과 아버지와 함께 사할린으로 돌아간 매우 드문 경우이다.

### 3. 도착해서 종전까지

강제연행된 면담자들은 군지역단위로 수십명씩 모여 부산 등에서 일본 본토를 거쳐 사할린에 도착해서는 대부분 같은 장소로 가서 같은 숙소에 배치 받았다. 주로 탄광에서 2~3교대로 일주일 마다 교대 조를 바뀌가면서 위험하고 힘든 일을 했다. 일본인의 감시가 심했고 작업이 없는 시간에는 군사훈련을 받기도 했으며 출고 배고파서 징역산 것과 같았다고 회상한다. 울산이 고향인 K씨는 아버지가 탄광에 가면 고생 많이 한다고 어업회사 포경부로 가도록 부탁해서 울산에 있던 회사를 통해 고래잡이배를 탄 경우로, 종전 후 타고 있던 배가 해상에서 러시아 경비대에 붙잡혀 사할린으로 끌려가서 억류되고

말았다.

탄광 등 노역한 지역에서의 거처는 합숙소로 군대막사 처럼 가운데 복도가 있고 양 옆에 방이 쪽 있는데 방은 칸으로 막힌 경우도 있고 터진 경우도 있다. 복도 양 끝에 출입문이 있고 출입문에 붙은 방에서 감시했다. 방마다 6,7~20명 정도 짐승과 한가지로 드러누워 잤다(J). 건물 1체에는 수십~백수십명씩 머물렀으며, 큰 탄광에는 이런 료가 6~7개 있었다. 석탄을 때는 난방스토브는 방마다 1개 혹은 복도에 서너개 있어서 불이 다 타고나면 몹시 추웠다. 배급되는 옷이나 이불이 형편없어 이불과 요를 겹쳐 깔고 옷을 덮고 자기도 하고 교대한 동료의 이불을 덮기도 했다. 식사는 밥표를 받아 숙소 옆 함바에서 먹고 도시락을 받았다.

합숙소의 거처공간은 마루바닥이거나 그 위에 다다미를 깔 경우도 있었다. 바닥은 물로 청소하면 얼었다. 벽은 나무판으로 되어있어 판자사이로 눈이 들어와 이불위에 쌓이고 방에 놓은 물이 얼고 입에 김이 서릴 정도였다. 방안은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 2층으로 된 곳도

있었다(H). 합숙소는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산 밑에 위치하였고 지붕에는 짚을 입히고 연통만 내놓았거나(F) 시커먼 기름종이로 덮었다. 너무 춥고 고생스러워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J) 마음 뿌릴 자리가 없어서 술 먹는 사람도 많았다(M). 감시와 힘든 노동과 때론 군사훈련으로 꿈쩍 못하고 일만 해서 탄광을 벗어나 어디 다녀보지 못했다. 감금생활이었다.

#### 4. 전후 결혼과 주거마련

사할린에는 승전국인 소련군이 1945년 8월 하순에 홉스크와 코르사코브항에 상륙하면서 출국금지시켰던 일본인을 1946년 12월~1949년 7월 본국으로 영주귀국 하게 하였다. 한국인은 영주귀국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몇 년후 일본국적마저 상실되고 한·러간 국교가 없는 관계로 무국적자로 남겨지게 되었다. 이 변동기간 동안 고국으로 송환되기만을 기다리며 징용시 일터를 계속 지키고 있다가 이제 갈 데로 가라는 말을 듣고 고르노자보드스크, 마카로브, 홉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등 가까운 큰 동네로 나와서 일본인이 버리고 간 빈 집을 허가받아 친구들과 어울려 살면서 귀향의 희망을 놓지 않았다. 이들은 고국과 소식이 끊긴 채 일본인이 떠난 상태에서 귀향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1949~1955년 사이에 결혼하게 된다. 배우자는 대부분 한국에서 부모를 따라 온 동포여성이지만 드물게 러시아 여성(J)이나 부모 따라 온 중앙아시아 고려인(Q), 북조선 여성(G)도 있다.

이 당시 주거는 낡은 일본식 집으로 국가에서 빌린 형태이다. 내집마련은 1950년대 말부터 1960년에 러시아식 집을 짓거나 러시아식 집을 구입하거나 국가로부터 받거나 하면서 주거생활이 차츰 안정되어갔다. 주거이동이 자유롭지 않았던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 은퇴할 때까지 주거지 이동은 흔하지 않았으며 살던 집이 낡거나 좁으면 대부분 집을 고치거나 헐어 다시 지어 살았다.

#### 5. 영주귀국전 주거

은퇴 후 영주귀국하기 전까지는 살던 곳,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수(R, L)는 은퇴 후 자녀가 있는 큰 땅 러시아 하바로브스크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영주귀국 하였거나(R), 다시 유즈노 사할린스크로 돌아와 영주귀국운동에 참여했다가 귀국(L)한 경우가 있다. G씨는 시네고르스크에서 주도인 유즈노 사할린스크로 옮겼다.

영주귀국 하기 전에 살던 집은 자녀(D)나 친척(F)에게 싸게 팔거나 타인(R, Q)에게 판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은 가까이 곳에 살고 있던 자녀에게 주고 왔다. 주택을 증여 받은 자녀는 그 주택에 지금까지 계속 거주하거나 관리하고 있는데 K씨와 L씨 자녀는 팔았다고 한다.

주택 이외에 주요 자산은 영주귀국 후에도 사망시까지 소련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연금이다. 연금수령자는 부부

각자가 자녀의 경제형편을 고려하여 대리지정하였다. 학비하라고 손녀(M)가 받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 세대가 수령자이다. 연금은 수령자가 사용하지만 형편이 괜찮으면 더러는 모아 놓았다가 부모가 사할린 방문 시 일부 내놓기도 한다.

면담자들은 살던 지역에서 고국방문과 영주귀국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였던 마카로브(O), 체호프(K), 홉스크(S) 지역의 지부장이 포함되어있다. 고국방문은 처음에는 일본으로 가서 한국의 가족과 친척을 불러 상봉이 이루어지다가 그 다음은 일본에서 가족상봉 후 고향방문을 한 후, 1989년부터 직접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면담자들은 고향마을로 영주귀국하기 전에 수차례 고국방문을 하여 한국의 가족과 친척을 만나고 직접 지내보면서 고국으로의 영주귀국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영주귀국은 부모의 유언이었으며 평생 간직한 꿈이었으나 막상 현실로 나타나자 귀국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데는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은 이미 늙었으며, 고국이라 해도 살아온 체제가 다른데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자본주의인 한국이 약속대로 대우해줄지 하는 우려가 컸다. 아울러 사할린에서 일귀운 터전을 뒤로 하고 다시 맨몸으로 자녀와 친척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데는 큰 결단이 필요했다.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후에 초상집 같은 분위기였으며, 가보고 못살겠으면 돌아오라고 비행기요금을 건네준 자녀도 있었다. 그리운 고향이니까,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은 고국을 방문해서 둘러본 경험과 이 때 만나본 친인척의 권유와 더불어 귀국을 결심하는 힘이였다.

#### 6. 고향마을에서의 생활

영주귀국을 원하는 사할린 동포 500세대용 아파트 건축에 대한 합의는 1994년 한·일 적십자사간에 이루어졌으나 아파트 부지선정이 지연되다가 1997년 안산시 신매립지에 짓기로 확정되어 1999년 말에 완공되었다. 건설비는 일본적십자가, 부지는 토지공사가 제공하고, 주택공사가 건설과 관리를 담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사지연으로 인해 완공 때까지 우선 1998년 인천 삼산동과 서울 둔촌동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도 하였다. 면담자 중에는 이때 삼산동(B, J, K, S)과 둔촌동(E)으로 왔다가 고향마을로 입주한 경우가 있다.

고향마을입주 초기의 생활에 대해서는 입주 첫해에 일본적십자사의 지원으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수행한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생활실태조사(최종혁, 2003; 호경임, 2002; 황정태, 2002)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에서 밝힌 귀국동기는 고향과 친지가 그리워서(43.8%)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뼈라도 묻히고 싶어서(23.0%), 사할린 가족의 귀국을 추진하기 위해(19.5%), 러시아 생활이 어려워(11.9%)이었다. 영주귀국으로 이러한 동기가 대

부분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 후 생활에서 불편한 점(한동우, 2002)은 사할린을 자주 방문하지 못한다(88.6%)와 한국에서 사할린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한다(87.6%) 두 가지가 일반적인 노인이 겪는 문제인 경제적 어려움(35.5%), 외로움(26.0%), 몸이 아픔(17.3%), 할 일 없음(14.1%) 보다 훨씬 컸다. 영주귀국한지 8년이 된 이 연구시점에서는 입주초기보다 면담대상자들이 정서적, 경제적 생활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다. 사할린 가족과의 생이별은 영주귀국의 대가로 여전한 고통이지만 잦은 전화통화와 상호 방문으로 완화되고 있었다.

아파트에 제공되는 중앙난방과 온수, 엘리베이터 같은 편리한 시설설비는 석탄페치카를 때고 재를 치우고 쌓인 눈을 치워야하는 사할린의 주거생활에 비해 누구나 가장 큰 장점으로 치는 주거생활이었다. 아프면 요양원으로 가면 자식대신 돌봐주고, 죽으면 장사지내 천안 망향의 동산에 묻히는 것을 보면서 미래의 불안을 덜게 되었다.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국민기초생활지원비와 특별생계비 등은 아껴 쓰면 부족하지 않고, 자신의 장례에 들 초상비용(약 200만원)을 저축해 놓고, 가족 선물비용으로 쓰기도 한다. 온화한 날씨와 과일과 야채도 흔해 사할린에서 보다 여기서 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같다(P). 한마디로 여기가 천국이다(R).

친척과의 교류는 사할린으로 이주하게 된 동기에 따라 달랐다. 단신으로 고국을 떠난 강제징용자들은 사할린에서 사는 동안 한국에 남은 부모형제와 연락을 못해 그리움으로 애를 태우다가 마침내 감격스런 재회를 하였으나 세월이 오래 흘러 부모는 물론 형제마저 사망하고 조카들만 남은 경우가 많아 이들과 공감대가 적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부모를 따라 사할린으로 간 경우는 사할린에 사는 동안에도 부모와 형제들이 같이 살았으며 영주귀국 후에도 생존해있는 형제들과 더러는 조카까지 영주귀국 하여 서로 가까이 지내면서 자주 방문하고 남은 형제의 귀국을 돕기도 한다.

## V. 결론

이 연구는 경기도 안산시 고향마을에 거주하는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20명을 면담하여 이들이 사할린으로 떠나면서부터 영주귀국해서 까지 경험한 주거생활사를 주요상황변화가 발생한 강제이주, 강제노동현장, 결혼, 영주귀국 전과 후의 주거생활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사할린에서의 생활은 사할린으로 이주하게 된 동기에 따라 차이가 났다. 단신으로 강제연행된 경우는 원가족을 한국에 두고 강제로 연행된 피해당사자로서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일을 했다. 부모를 따라 간 경우는 부모형제와 함께 지내면서 해방전후 일본학교와 한인학교, 더러는 소련학교교육을 받아 러시아어가 능숙하고 고임금 기술직에서 일하기도 했다.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오는 사할린 산간 지대인 강제 이주된 곳에서의 생활은 감시와 배고픔과 추위, 위험한 중노동 등으로 징역살이 같았다. 단신노동자는 군막사 같은 합숙소에서, 가족이 있는 노동자는 산 아래 연립주택에서 살았다. 몇 년이 지나 소비에트 정치체제가 자리 잡힌 후에야 옛 일터를 벗어나 새 일자리를 찾아 정착한다. 귀향이 쉽지 않다고 생각되면서 결혼하고. 버려진 낡은 일본집을 얻어 수선하여 살다가 헐어 버리고 새로 러시아식으로 짓거나 러시아집을 사기도하고 국가에서 받기도 한다. 거주지 이동이 제한되어 은퇴해서도 귀국할 때까지 대부분 같은 집에서 살았다. 은퇴 후에는 연금과 채소를 길러 팔면서 살았다. 영주귀국은 평생의 한을 푸는 기회였으나 자녀와 친척을 남겨두고 오는 이산의 아픔을 다시 감수해야 했다. 이제 귀국한지 10년 가까이 되면서 정서적,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귀국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강제이주자는 생전에 얼마라도 피해보상 받기를 바라고 있다. 지역사회와 의 쌍방적인 통합 노력은 최근 영주귀국한 동포에게도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립민속박물관(2001). **러시아 사할린·연해주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 김주자(2007). **사할린 귀환동포의 생활 적응 실태연구: 노인시설 거주자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상우(2006). **사할린영주귀국 시설노인의 생활실태 및 만족도에 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1997). 러시아 사할린주 한인의 실태연구. **영남정치학회보** 7, 257-314.
- 정천수(2007).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생활상 및 사회복지지원실태에 관한 연구: 안산 고향마을을 중심으로**.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한구(2007). 러시아의 한인들, 1864-2002. **세종정책연구** 3(2), 219-247.
- 최종혁(2003). 사할린 귀환동포의 생활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논문집** 42, 1-23.
- 최한우(2004). 통계로 본 러시아 고려인 사회.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월간한민족** 2(7), 56-62.
- 호경임(2002). **사할린 귀환동포의 생활만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형욱, 양세화, 전남일(2009). 생애구술을 통해 본 주거의 의미와 사용도: 주거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1), 45-60.
- 황현옥(2004). **집단미술치료가 사할린 귀환동포의 자아 통합감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 동서보완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정태(2002). **사할린 귀환동포의 생활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겨레신문. '징용 한 셋고 편히 쉬소서' 60년만에 사할린 동포 현지 위령제 치러. 2005.8.2.
- 한겨레신문. 일 '사할린 포로나이스크 한인 학살' 2006.9.8.